

◎중양해양안전심판원공고 제2024-30호

개선권고 재결

2024년 5월 16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9일

중양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 공고[(동해해심 제2024-004호) 어선 청일호 · 어선 동인1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어선 청일호 · 어선 동인1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정\*\* (강\*\*\*\*\* \* \*\* \*\* \*\* \*\* \*\* \*\* \*\* \* \*\* \*\* \*\* (\*\*\*\*\*)

개 선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동인1호가 2023. 8. 4. 05:49경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항 동방파제 끝단으로부터 방위 약 050도 거리 약 0.7해리 떨어진 해상(북위 37도 13분 57초·동경 129도 21분 25초)에서 어선 청일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항행 중이던 청일호가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기 선박 진로의 전방에서 잠수기어업 중이던 동인1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할 때까지 아무런 피항조치를 하지 못한 것이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지만, 동인1호가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던 청일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아무런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①잠수부가 해저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에는 잠수부의 안전 및 충돌사고 예방 등을 위해 주변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하고,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 경우 미리 주의환기 신호를 보내거나 초단파대무선전화(VHF)로 상대선박을 호출하여 자기 선박을 피해가도록 하며, ② 잠수기어업에 종사할 때에는 미리 그 높이가 1미터 이상인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신호서 에이(A)기의 모사판(模寫版)을 사방에서 볼 수 있게 선박에 표시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